

소규모 펀드 이행실적 등 안내

2016. 10. 01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의거한, 당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 기구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 후 1년이 경과한 펀드로서 지난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당사 소규모펀드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- 다 음 -

1. 소규모펀드 비율 공시 (2016.09.30. 기준)

| 공모추가형 펀드수 | 부실자산펀드수 | 증투법펀드 중 (구)개인연금펀드 | 소규모펀드수 | 소규모펀드비율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22 | 0 | 0 | 4 | 18.18% |

2.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/>),

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midasasset.com/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